| 투자 위험 등급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 | | | | |
|---|---|---|---|---|---|
| 1 | 2 | 3 | 4 | 5 | 6 |
| 매우 높은 위험 | 높은 위험 | 다소 높은 위험 | 보통 위험 | 낮은 위험 | 매우 낮은 위험 |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6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 투 자 설 명 서

이 투자설명서는 **하나 UBS 신종 MMF(S-29 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 UBS 신종 MMF(S-29 호)**의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하나 UBS 신종 MMF(S-29 호)**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 주식회사
3. 판 매 회 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ubs-hana.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 성 기 준 일 : 2023 년 03 월 20 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23 년 03 월 30 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모집(매출) 총액] : 수익증권 [10 조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이 집합투자기구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 kofia.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금융위원회, 각 판매회사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해당사항 없음

**※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청약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UBS 자산운용

# 목 차

CONTENTS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요약정보**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정보**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의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6.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붙임] 용어풀이**

하나UBS 자산운용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7. MMF 펀드(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수익구조가 은행의 예금과 유사하지만, 예금과 달리 원금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9.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 년(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 년)이 되는 날에 설정액 50 억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펀드로서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UBS 자산운용

<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2023.03.20.

# 하나UBS 신종MMF(S-29호) [펀드코드 : 16193]

| 투자 위험 등급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 | | | | |
|---|---|---|---|---|---|
| 1 | 2 | 3 | 4 | 5 | 6 |
| 매우 높은 위험 | 높은 위험 | 다소 높은 위험 | 보통 위험 | 낮은 위험 | 매우 낮은 위험 |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6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투자신탁은 유동성이 높고 위험이 적은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자에게 유용한 현금관리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입니다. 따라서, 투자위험이 적은 대신 기대수익도 낮다는 점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하는 투자가 및 단기금융상품 투자를 통하여 현금관리를 유용하게 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집합투자기구의 핵심위험에 대해 투자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하나UBS 신종MMF(S-29호)**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 | |
|---|---|
| 투자목적 및 전략 | 이 투자신탁은 유동성이 높고 위험이 적은 단기금융상품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안정적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신탁업자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수익자에 대해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br><br>* 비교지수(Benchmark) : Call 금리X 100%<br>상기의 비교지수는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 등장에 따라 변경된 비교지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br><br>**[위험관리]**<br>이 투자신탁은 신용평가등급 투자제한 및 가중평균잔존만기 조절을 통하여 유동성확보를 위한 위험관리에 주력합니다<br>투자위험에 대한 세부사항은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중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분류 | 투자신탁, 단기금융(MMF),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 전환형 |

투자비용

(2022년 03월 24일 기준)

| 클래스 종류 |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및 비용(연간, %) | | | |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 (단위:천원) | | | | |
|---|---|---|---|---|---|---|---|---|---|---|
| | 판매 수수료 | 총 보수 | 판매 보수 | 동종유형 총보수 | 총보수•비용 | 1년 | 2년 | 3년 | 5년 | 10년 |
| 수수료선취-오프라인-전환가능(A-U) | 납입금액의 1.0% 이내 | 0.1320 | 0.0784 | 0.35 | 0.1320 | 113 | 127 | 142 | 174 | 268 |

| | | | | | | | | |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 없음 | 0.1320 | 0.0784 | 0.21 | 0.1366 | 14 | 29 | 44 | 77 | 176 |

* 상기 종류 수익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종류 및 구체적인 투자비용 에 대해서는 투자설명서(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2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집합투자기구는 오프라인 클래스에 비해 일반적으로 투자비용이 저렴한 온라인 클래스가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 [A-U형]이 [C형]보다 총비용이 지속적으로 높습니다.
* 투자자가 1,000만원 투자시 부담하는 총비용 예시 :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 [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및 피투자지구의 비용 등 포함)]을 의미합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판매수수료율 또는 총보수(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 포함)·비용비율은 일정한 것으로 가정합니다.
*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연환산)**

(2022년 03월 24일 기준)

| 종류 | 최초설정일 | 최근 1년 | 최근 2년 | 최근 3년 | 최근 5년 | 설정일이후 |
|---|---|---|---|---|---|---|
| | | 2021/03/25 ~ 2022/03/24 | 2020/03/25 ~ 2022/03/24 | 2019/03/25 ~ 2022/03/24 | 2017/03/25 ~ 2022/03/24 | (%) |
| 신종MMF(S-29호)ClassC | 2000-03-25 | 1.11 | 1.05 | 1.25 | 1.42 | 3.17 |
| 비교지수 | 2000-03-25 | 0.79 | 0.66 | 0.94 | 1.15 | 1.10 |
| 수익률 변동성(%) | 2000-03-25 | 0.06 | 0.05 | 0.06 | 0.06 | 0.43 |

* 비교지수 = Call 금리X 100%
* 연평균 수익률은 과세전 수익률이며,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별도로 표시한 기준일이 있을 경우 그 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종류C의 수익률만 대표로 기재하였고, 다른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률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용전문 인력**

(2023년 03월 20일 기준)

| 구분 | 성명 | 생년 | 직위 | 운용현황 | |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단기금융(MMF)_국내, %) | | | | 운용 경력년수 |
|---|---|---|---|---|---|---|---|---|---|---|
| | | | | | | 운용역 | | 운용사 | | |
| | | | | 집합투자 기구수(개) | 운용 규모(억원) | 최근1년 | 최근2년 | 최근1년 | 최근2년 | |
| 책임 | 전나영 | 1975 | 부문장 | 56 | 243,838 | 2.89 | 1.94 | 2.76 | 1.82 | 16.8년 |
| 부책임 | 김동명 | 1988 | 차장 | 3 | 12,412 | 2.21 | 1.34 | 2.76 | 1.82 | 3.4년 |

* "책임운용전문인력"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의미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의미합니다.
*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를 의미하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 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 |
|---|---|
| | · 원본손실위험 등 이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br>**※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요투자 위험 | |

| 구 분 |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
|---|---|
| **투자원본 손실위험** | 이 투자신탁은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위험이 존재하며, 투자의 결정과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의 결정 및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예금과 달리 은행 등에서 매입한 경우에도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 **이자율 변동위험** | 일반적으로 채권 등 채무증권의 가격은 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변동됩니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무증권의 가격의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행하나,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무증권의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위험** | 투자신탁 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채권, 어음 등의 신용평가등급이 최상위등급에서 차하위등급으로 하락한 경우, 신용평가등급이 하락하여 상위 2 개등급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증권 등을 지체없이 처분하거나 시가로 가격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므로 이에 따라 신탁재산의 가치가 급격하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장부가와 시가와의 괴리 조정에 따른 기준가격 변동 위험** | 장부가에 따라 계산된 기준가격과 시가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의 차이를 수시로 확인하여 그 차이가 1,000 분의 5 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재산의 가격을 조정하거나 매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므로 이에 따라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이 급등락 할 수 있습니다. |

**※ 기타 다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매입 방법 | · 17시 이전 : 제2영업일<br>· 17시 경과 후 : 제3영업일 | 환매 방법 | · 17시 이전 : 제2영업일 기준가 제2영업일 지급<br>· 17시 경과 후 : 제3영업일 기준가 제3영업일 지급 |
| 환매 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 | |

| | |
|---|---|
| 기준가 | **· 산정 방법**<br>- 당일 공고되는 기준가 = (직전일 투자신탁 자산총액 - 부채총액)/직전일 수익증권 총좌수<br>-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br>**· 공시방법**<br>- 서류공시 : 판매회사 영업점에서 게시 및 공시<br>- 전자공시 :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
| 과세 |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및 일반법인 15.4%(지방소득세 포함)**<br>-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br>-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br>**※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 및 종류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과세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 |

| | |
|---|---|
| | **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전환절차 및 방법** | 투자자는 투자자의 판단에 따라 다음 8 개 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내에서 투자대상 집합투자기구를 변경(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환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는 징구하지 아니합니다. |

| 유형 | 전환가능 집합투자기구(종류 A-U에 한함) |
|---|---|
| **주식파생형** | 하나UBS 엄브렐러뉴인덱스증권투자신탁(K-1호)[주식-파생형] |
| **주식파생형** | 하나UBS 엄브렐러리버스인덱스증권투자신탁(K-1호)[주식-파생형] |
| **주식형** | 하나UBS 코리아중소형 증권자투자신탁[주식] |
| **주식형** | 하나UBS IT코리아 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 |
| **주식형** | 하나UBS 밸류코리아 증권자투자신탁[주식] |
| **주식파생형** | 하나UBS 파워1.5배 레버리지인덱스 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 |
| **단기금융(MMF)** | 하나UBS 인Best신종MMF(K-1호)[국공채](수익자가 개인인 경우) |
| **단기금융(MMF)** | 하나UBS 신종MMF(S-29호)(수익자가 법인 등 개인이 아닌 경우) |

| | | | |
|---|---|---|---|
| **집합투자업자** |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br>대표전화 : 02-3771-7800, 홈페이지 : www.ubs-hana.com | | |
| **모집기간** |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 | **모집·매출 총액** | 10조좌(1좌단위 모집) |
| **효력발생(예정)일** | 2023년 03월 30일 | **존속 기간** |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
| **판매회사** | 집합투자업자(www.ubs-hana.com)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 | | |
| **참조** |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의 관한 사항, 4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각 종류별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류(Class) | |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
|---|---|---|
| **판매수수료** | **수수료 선취(A)** |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수수료 미징구(C)** |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판매경로** | **오프라인** |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 **기타** | **기관(F)** | 기관 및 법인 전용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랩(W)** | 판매회사의 일임형랩어카운트계좌, 특정금전신탁 등에 해당되는 경우 가입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전환가능(U)** | 전환이 가능한 종류(U)를 통해 집합투자증권 간의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종류(U) 집합투자증권 간에만 전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전환 시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 | **고액(I)** | 납입금액이 50억원 이상 수익자로 제한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ubs-hana.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ubs-hana.com)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ubs-hana.com)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집합투자기구 명칭 (종류형 명칭) | | 펀드코드 |
|---|---|---|
| 하나 UBS 신종 MMF(S-29 호) | | 16193 |
| A-U | 수수료선취-오프라인-전환가능 | AG638 |
| C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 AG637 |
| W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 AJ504 |
| C-F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 BB551 |
| C-I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 D8062 |

**2.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단기금융(MMF)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 종류형 (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 전환형 (다른 집합투자기구로 전환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바. 가입대상 : 법인투자자

사. 고난도금융상품: 해당사항 없음

주 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 2 부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모집예정금액**

10 조좌까지 모집 가능하며 1 좌 단위로 모집합니다. 단 모집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주 1)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2)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모집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기간 : 추가형으로 모집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계속 모집(판매)이 가능합니다.

나. 모집장소 : 판매회사 본지점으로 판매회사의 명단은 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ubs-hana.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모집방법 및 절차 : 영업일에 판매회사가 정한 기준으로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 판매합니다.

주 1) 그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 2 부의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집합투자기구 명칭 (종류형 명칭) | | 펀드코드 |
|---|---|---|
| 하나 UBS 신종 MMF(S-29 호) | | 16193 |
| A-U | 수수료선취-오프라인-전환가능 | AG638 |
| C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 AG637 |
| W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 AJ504 |
| C-F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 BB551 |
| C-I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 D8062 |

##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변경시행일 | 변경사항 |
|---|---|
| 2000년 03월 25일 | - 최초설정일 |
| 2004년 07월 05일 | - 운용제한 변경 |
| 2005년 06월 07일 | - 판매 및 환매 기준가격 예외 |
| 2005년 07월 22일 | - 수탁사 변경 (하나은행->우리은행) |
| 2005년 11월 01일 | - 운용제한 변경 |
| 2005년 11월 21일 | - 환매 기준가격 예외조항 폐지 |
| 2006년 07월 01일 | - 보수배분율 변경 |
| 2008년 07월 16일 | - 보수변경 |
| 2009년 04월 29일 | - 자본시장법에 따라 펀드명칭 변경<br>- 신종MM F S-29 호=>하나 UBS 신종 MMF(S-29 호) |
| 2009년 07월 27일 | - 법개정에 따른 국채 잔존만기 완화 등 |
| 2012년 05월 16일 | - 투자설명서 정기 갱신 |
| 2013년 02월 04일 | - 일반사무관리회사 변경 (HSBC 펀드서비스 → 외환펀드서비스) |
| 2013년 03월 11일 | - 종류형으로 전환 및 전환형 클래스 신설 |
| 2013년 04월 08일 | - 엄브렐러 클래스 라인업 추가로 인한 변경<br>- 보수인하 (신탁업자보수 및 일반사무관리보수 인하) |
| 2013년 04월 12일 | - 엄브렐러 클래스(A-U) 전환 시 적용 Late Trading<br>- 단서조항 추가 |
| 2013년 05월 31일 | - 자통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사항 등 반영<br>- 투자설명서 정기 갱신 |
| 2013년 06월 19일 | - 랩어카운트 전용 클래스 신설 |
| 2013년 11월 01일 | -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사항 반영 |
| 2014년 06월 18일 | - 미국세금 원천징수 및 해외계좌 신고제도(FATCA) 조항 신설 |

| | |
|---|---|
| 2015년 01월 23일 |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반영 및 투자설명서 업데이트 |
| 2016년 03월 04일 | - 종류 C-F 수익증권 신설<br>-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2016.1.21 시행)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사항 반영 (2016.01.25 시행) |
| 2016년 03월 31일 | - 전환대상펀드(신종 MMF S-51 호) 보수변경 반영 및 자구수정 등<br>- 효력발생일 변경 |
| 2016년 07월 02일 | - 투자위험등급 분류체계 개편 내용 반영 |
| 2017년 04월 12일 | - 전환대상펀드(신종 MMF S-26 호) 추가, 해지된 전환대상 펀드 삭제 등 |
| 2017년 05월 23일 | -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
| 2017년 06월 07일 | - 전환대상 투자신탁(하나 UBS 인 Best 신종 MMF(K-1 호)[국공채]) 추가<br>- 해지된 전환대상 투자신탁(하나 UBS 신종 MMF(S-51 호)) 삭제 |
| 2018년 04월 12일 | -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 |
| 2018년 05월 25일 | -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br>-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 2018년 12월 24일 | - 전환대상 투자신탁 중 하나 UBS 신종 MMF(S-26 호) 삭제 |
| 2019년 05월 21일 | -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 |
| 2019년 09월 25일 |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br>-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변경 |
| 2020년 02월 21일 | - 자산유동화증권 투자위험 신설 |
| 2020년 05월 07일 | -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br>-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 |
| 2020년 07월 08일 | - 전환대상펀드 정보변경<br>- 종류 C-I 수익증권 신설<br>- 종류 C-F 가입자격 정정 |
| 2021년 04월 30일 | -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br>-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br>-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사항 반영 |
| 2022년 04월 01일 | - 전환대상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변경<br>-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사항 반영 |
| 2022년 05월 24일 | -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br>-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br>-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
| 2023년 03월 30일 | -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사항 반영<br>-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반영<br>-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br>-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추가(김동명) |

###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 1)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집합투자기구의 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 집합투자업자

| 회 사 명 |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 |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대표전화: 02-3771-7800) |

주 1)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회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2023 년 03 월 20 일 기준)

| 구분 | 성명 | 생년 | 직위 | 운용경력 | 주요운용 이력 |
|---|---|---|---|---|---|
| 책임 | 전나영 | 1975 | 부문장 | 16.8년 | -하나UBS자산운용 채권운용팀(2002.10.01~현재) |
| 부책임 | 김동명 | 1988 | 차장 | 3.4년 | -하나UBS자산운용 채권운용팀(2019.11.01~현재) |

| 구분 | 성명 | 생년 | 직위 | 운용현황 | |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단기금융(MMF)_국내, %) | | | |
|---|---|---|---|---|---|---|---|---|---|
| | | | | | | 운용역 | | 운용사 | |
| | | | | 집합투자기구수(개) | 운용규모(억원) | 최근1년 | 최근2년 | 최근1년 | 최근2년 |
| 책임 | 전나영 | 1975 | 부문장 | 56 | 243,838 | 2.89 | 1.94 | 2.76 | 1.82 |
| 부책임 | 김동명 | 1988 | 차장 | 3 | 12,412 | 2.21 | 1.34 | 2.76 | 1.82 |

* "책임운용전문인력"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의미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의미합니다.

*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를 의미하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 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 기준일 현재 동 운용전문인력이 운용 중인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는 없습니다.

나. 최근 3 년 운용전문인력 변동현황

| 책임운용전문인력 | 운용기간 |
|---|---|
| 전나영 | 2006 년 06 월 01 일 ~ 현재 |
| **부책임운용전문인력** | **운용기간** |

| 김동명 | 2023 년 03 월 30 일 ~ 현재 |
|---|---|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단기금융(MMF), 추가형, 개방형, 법인투자, 종류형, 전환형

나. 종류형 구조 :

이 투자신탁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 투자신탁입니다.

| 종류(Class) | |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
|---|---|---|
| 판매 수수료 | 수수료 선취(A) |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수수료 미징구(C) |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판매 경로 | 오프라인 |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 기타 | 기관(F) | 기관 및 법인 전용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랩(W) | 판매회사의 일임형랩어카운트계좌, 특정금전신탁 등에 해당되는 경우 가입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전환가능 (U) | 전환이 가능한 종류(U)를 통해 집합투자증권 간의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종류(U) 집합투자증권 간에만 전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전환 시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 | 고액(I) | 납입금액이 50억원 이상 수익자로 제한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환(종류 A-U(수수료선취-오프라인-전환가능엄브렐러)에 한함)**

투자자는 투자자의 판단에 따라 다음 8개 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내에서 투자대상 집합투자기구를 변경(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환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는 징구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판매사의 사정에 따라 전환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 판매사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유형 | 전환가능 집합투자기구 |
|---|---|
| **주식파생형** | 하나UBS 엄브렐러뉴인덱스증권투자신탁(K-1호)[주식-파생형] |
| **주식파생형** | 하나UBS 엄브렐러리버스인덱스증권투자신탁(K-1호)[주식-파생형] |
| **주식형** | 하나UBS 코리아중소형 증권자투자신탁[주식] |
| **주식형** | 하나UBS IT코리아 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 |
| **주식형** | 하나UBS 밸류코리아 증권자투자신탁[주식] |
| **주식파생형** | 하나UBS 파워1.5배 레버리지인덱스 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 |
| **단기금융(MMF)** | 하나UBS 인Best신종MMF(K-1호)[국공채](수익자가 개인인 경우) |
| **단기금융(MMF)** | 하나UBS 신종MMF(S-29호)(수익자가 법인 등 개인이 아닌 경우) |

※ 상기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유동성이 높고 위험이 적은 단기금융상품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자에게 유용한 현금관리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국공채 및 어음 등에 투자하여 단기 시장수익률에 연동된 안정적인 이자수익 추구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 4 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하며, 원화로 표시된 자산에 한함)

: 단, 채무증권(법제 4 조제 3 항의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 기업어음증권에 한하며, 환매조건부채권 매매는 제외함)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상을 운용하여야 함.

| 투자대상 | 투자대상 내역 |
|---|---|
| 양도성 예금증서 | - 남은 만기가 6개월 이내에 한함 |
| 채무증권<br>(채권, 기업어음) | - 남은 만기가 5년 이내인 국채증권,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주권관련사채권 및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사채권은 제외한다) 및 기업어음증권. 다만, 환매조건부매수의 경우에는 남은 만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
| 어음 | -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어음(기업어음증권은 제외) |
| 단기대출 | -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
| 금융기관 예치 | - 만기가 6개월 이내인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의 예치 |
| 집합투자증권 |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
| 환매조건부 매매 | -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할 것을 조건으로 매매하는 경우 |
| 단기사채등 | - 법 제 4 조제 3 항에 따른 채무증권인 사채권으로서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전자적 방식으로 등록된 것 |
|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 법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 채무증권(양도성 예금증서 및 금융기관이 발행・매출・중개한 어음 및 채무증서를 포함)신용등급 | - 집합투자업자가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운용할 수 있는 채무증권(양도성 예금증서 및 금융기관이 발행・매출・중개한 어음 및 채무증서를 포함함. 이하 같다)은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2 이상의 신용평가업자로부터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 중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말함)이 최상위등급 또는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상위 2 개 등급") 이내이어야 함. 이 경우 신용평가등급은 세분류하지 않은 신용평가등급을 말함.<br>-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채무증권은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에 미달하거나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도 투자할 수 있음. |

| | |
|---|---|
| | • 보증인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 이내인 채무증권<br>• 담보 또는 처분옵션을 감안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상위 2개 등급에 상응한다고 인정하는 채무증권<br>•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채무증권으로서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상위 2개 등급에 상응한다고 인정하는 채무증권<br>-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에서 운용하는 채무증권의 신용평가등급(신탁계약서 제 18 조제 2 항제 1 호의 보증인의 신용평가등급 포함한다)이 최상위등급에서 차하위등급으로 하락한 경우 당해 채무증권에 대한 신용위험을 재평가하고 편입비율을 축소하는 등 수익자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br>-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에 편입된 채무증권의 신용평가등급이 하락하여 상위 2 개등급에 미달하는 경우(신탁계약서 제 18 조제 2 항제 2 호 및 제 3 호에 따라 편입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상위 2 개등급에 상응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를 포함함) 또는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증권을 지체없이 처분하거나 시가 또는 공정가액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등 투자자간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함. |
| 운용 및 투자제한의 예외 | - 신탁계약서 제19조제3호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채무증권 또는 그 밖의 거래에 대해서는 편입비율을 축소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br>-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가격변동 등의 사유로 신탁계약서 제 19 조제 9 호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법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으로 정하는 기간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br><br>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합니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기간을 말합니다.<br>1. 집합투자업자의 운용 책임이 강화된 집합투자기구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 6개월<br>2.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의 경우: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br>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이 제2호에 따른 투자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처분이 가능한 시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 |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구분 | 내용 | 적용예외 |
|---|---|---|
|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 매수** |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 |

| | | |
|---|---|---|
| |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br>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br>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 |
| **동일종목 투자** | -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최상위등급 및 2%를 초과하여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에 투자하는 행위.(단, 만기 80일 이상 100일 이내인 양도성예금증서(이하 "지표물 양도성예금증서"라 한다)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까지는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발행 당시 만기가 7영업일 이내인 단기사채의 경우 "5%"는 "1%"로, "2%"는 "0.5%"로 적용하고 이 경우 채무증권의 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어음(나목의 어음은 제외한다)의 경우 "5%"는 "3%"로, "2%"는 "1%"로 적용한다.)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보며,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일종목 채무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br>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br>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및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u>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u>)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 |
| **기타 투자제한** | -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의 평가액과 그 동일인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그 밖의 거래 금액(자금중개회사를 경유하여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 이내인 금융기관에 단기대출한 금액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7-19조제3항제2호에 따른 환매조건부매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 지표물 양도성예금증서를 취득한 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 또는 그 밖의 거래 당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한도를 초과하는 채무증권 또는 그 밖의 거래에 대해서는 편입비율을 축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br>- 증권을 대여하거나 차입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br>- 남은 만기가 1년 이상인 국채증권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운용하는 행위<br>-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증권총액의 5%를 초과하여 환매조건부 매도를 하는 행위<br>- 이 투자신탁재산의 남은 만기의 가중평균이 60일을 초과하는 행위. 다만, 신탁계약서 제29조제2항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을 시가로 평가하게 되는 | |

| | | |
|---|---|---|
| | 경우 "60일"은 "120일"로 봅니다.<br>-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행위<br>가. 자산의 원리금 또는 거래금액이 환율·증권의 가치 또는 증권지수의 변동에 따라 변동하거나 계약시점에 미리 정한 특정한 신용사건의 발생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되도록 설계된 자산<br>나. 위의 가목과 같이 원리금 또는 거래금액, 만기 또는 거래기간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br>- 다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단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 | |
| **투자한도** | ① <u>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산을 합산한 금액이 투자신탁재산의 10%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산 외의 자산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u><br>1. 현금<br>2. 국채증권<br>3. 통화안정증권<br>4. 잔존만기가 1영업일 이내인 자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br>가. 양도성 예금증서.정기예금<br>나. 지방채증권·특수채증권·사채권(법 제71조제4호나목에 따른 주권 관련 사채권 및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사채권은 제외한다)·기업어음증권<br>다. 영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어음(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br>라. 단기사채<br>5. 환매조건부매수<br>6. 단기대출<br>7. 수시입출입이 가능한 금융기관에의 예치<br>②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산을 합산한 금액이 투자신탁재산의 30%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산 외의 자산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br>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자산<br>2. 잔존만기가 7영업일 이내인 자산으로서 제1항제4호 각목에 해당하는 것<br>3.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것<br>③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산에 대한 투자금을 합산한 금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에서 | |

| | | |
|---|---|---|
| | 차지하는 비중(이하 "안정적 자산 비중"이라 한다)이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산 외의 자산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신탁계약서 제29조제2항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을 시가로 평가하게 되는 경우 본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br>1. 현금<br>2.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통화안정증권 또는 정부가 지급을 보증한 채무증권<br>3. 양도성 예금증서<br>4.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 목부터 다 목 및 바 목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또는「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의 예치<br>5.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한 단기사채 또는 어음(기업어음증권을 포함한다.)<br>6. 금융투자업규정 제7-19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기대출 또는 환매조건부매수. 다만, 환매조건부매수의 대상증권이 국채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이며 최소증거금률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7-19조제3항제2호나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br>7.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기업어음증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어음 또는 단기사채 | |

**9.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 ■ 투자신탁재산을 채권 및 유동성자산에 투자하여 이자수익의 확보에 주력합니다.
- ■ 신탁재산의 가중평균잔존만기 조정을 통하여 유동성확보 및 안정적인 운용을 추구합니다.
- ■ 국고, 통안채 위주로 투자하여 신용리스크 최소화 합니다.
- ■ 예금 및 우량 CD 에의 투자로 안정적 수익률확보 및 유동성확보에 Focus 를 둡니다.
- ■ 비교지수 : **Call 금리 X 100%**

주 1) 이 집합투자기구는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운용하므로, **Call 금리 X 100%를** 비교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기의 비교지수는 2009 년 1 월 1 일부터 적용되며,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 등장에 따라 변경된 비교지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나. 위험관리

- ■ 신용평가등급 투자제한 및 가중평균잔존만기 조절을 통하여 유동성확보를 위한 위험관리에 주력합니다.

다. 수익구조

- ■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채권, 양도성 예금증권 및 어음 등에 투자하는 단기금융집합투

자기구로서 투자한 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주된 이익 또는 손실이 결정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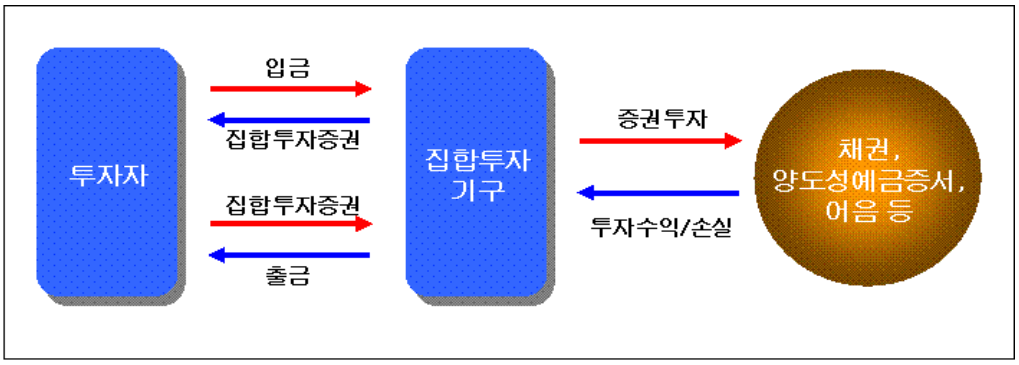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단기금융투자신탁(MMF) 의 경우 수익구조가 은행의 예금과 유사하지만, 예금과 달리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투자위험은 이 집합투자기구 투자와 관련된 모든 위험을 완전하게 열거하거나 설명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투자환경의 변화 등에 의하여, 여기에서 언급되지 않은 위험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반위험 : 집합투자기구의 가치에 직접 영향을 주는 위험으로서 이 집합투자기구가 노출된 위험을 나열한 것입니다.
- 특수위험 : 집합투자기구의 고유한 형태 또는 투자전략 및 투자방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위험으로서 이 집합투자기구가 노출되어 있는 위험을 나열한 것입니다.
- 기타 투자위험 등 : 일반위험 및 특수위험 외에 일반적으로 발생가능성이 낮거나 집합투자기구의 가치변동에 영향이 비교적 작은 위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투자의사 결정시 반드시 참고하여야 할 위험으로서 이 집합투자기구가 노출된 위험을 나열한 것입니다.

가. 일반위험

| 구 분 |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
|---|---|
| **투자원본 손실위험** | 이 투자신탁은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위험이 존재하며, 투자의 결정과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의 결정 및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예금과 달리 은행 등에서 매입한 경우에도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 | |
|---|---|
| **이자율 변동위험** | 일반적으로 채권 등 채무증권의 가격은 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변동됩니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무증권의 가격의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나,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무증권의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나. 특수위험

| 구 분 |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
|---|---|
|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위험** | 투자신탁 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채무증권의 신용평가등급이 최상위등급에서 차하위등급으로 하락한 경우, 신용평가등급이 하락하여 상위 2 개등급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증권 등을 지체없이 처분하거나 시가로 가격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므로 이에 따라 신탁재산의 가치가 급격하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장부가와 시가와의 괴리 조정에 따른 기준가격 변동 위험** | 장부가에 따라 계산된 기준가격과 시가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의 차이를 수시로 확인하여 그 차이가 1,000 분의 5 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재산의 가격을 조정하거나 매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므로 이에 따라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이 급등락 할 수 있습니다. |

다. 기타 투자위험

| 구 분 |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
|---|---|
| **유동성 위험** |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집합투자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집합투자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 **환매연기위험** | 투자대상 자산의 유동성이 낮은 경우 환매에 대응하기 위한 자산의 중도매각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고, 중도매각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 **자산유동화증권 투자위험** | 이 투자신탁은 ABCP 등의 자산유동화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자산유동화증권은 금융기관 또는 일반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비유동성 자산(기초자산)을 시장에서 판매 및 유통하기 용이한 형태로 증권화한 것으로 기초자산의 현금흐름 등으로 증권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기초자산의 현금흐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기초자산의 부실화, 발행회사의 파산 또는 채무불이행 등)이 발생하는 경우 원금 회수가 불가능하여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산유동화증권은 거래량이 풍부하지 않아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0.06%**임에 따라 **6 등급 중 6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매우 낮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 따라서, 투자위험이 적은 대신 기대수익도 낮다는 점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하는 투자가 및 단기금융상품 투자를 통하여 현금관리를 유용하게 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주1) 이 투자신탁은 추후 매 결산시마다 변동성을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 위험등급 분류기준]**

| 위험등급 | 1등급 | 2등급 | 3 등급 | 4 등급 | 5 등급 | 6 등급 |
|---|---|---|---|---|---|---|
| | 매우 높은 위험 | 높은 위험 | 다소 높은 위험 | 보통 위험 | 낮은 위험 | 매우 낮은 위험 |
| 표준편차 | 25% 초과 | 25% 이하 | 15% 이하 | 10% 이하 | 5% 이하 | 0.5% 이하 |

주1) 위 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의 자체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며, 판매회사는 판매회사별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11. 매입, 환매 기준가격 적용 기준 및 매입, 환매 방법적용 예외 사항**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재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가입대상

이 투자신탁은 법인투자자만 가입하실 수 있는 상품입니다.

* 종류별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 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가입자격 |
|---|---|
| 종류 A-U |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며, 투자신탁간 전환하고자 하는 투자자 |
| 종류 C |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
| 종류 W | 판매회사의 일임형랩어카운트계좌, 특정금전신탁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용에 해당되는 경우 |
| 종류 C-F | 가.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br>나.법시행령제10조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br>다. 500 억 이상 매입한 법인 |
| 종류 C-I | 고액거래자용 (납입금액이 50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 |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1) **오후 5 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 T일 | T+1일 |
|---|---|
| 자금납입일 | 집합투자증권 매입일 |
| (매입청구일) | (기준가적용일) |

(2) **오후 5 시 경과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 T일 | T+1일 | T+2일 |
|---|---|---|
| 자금납입일 | | 집합투자증권 매입일 |
| | (매입청구일) | (기준가적용일) |

(3)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개별적인 매입 또는 환매청구없이 사전 약정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수익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업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간 이전에 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환매청구하거나 판매회사에 따라 인터넷에서 온라인 환매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1) **오후 5시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2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 T일 | T+1일 |
|---|---|
| 환매청구일 | 기준가적용일<br>환매대금지급일 |

(2) **오후 5 시 경과 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 3 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 3 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 T일 | T+2일 |
|---|---|
| 환매청구일 | 기준가적용일<br>환매대금지급일 |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개별적인 매입 또는 환매청구없이 사전 약정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수익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업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간 이전에 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3) 환매수수료 : 이 투자신탁은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당일 17 시[오후 5 시] 이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매입청구 및 환매 청구가 17 시[오후 5 시] 이후에 이루어졌을 경우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정정)가 가능합니다.

5)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등

(1)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57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합니다.

(2)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의결되거나 환매를 계속 연기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사항을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1.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가. 환매에 관하여 의결한 사항

나. 기타 법 시행령 제257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

2. 환매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가. 환매를 연기하는 사유

나. 환매를 연기하는 기간

다.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환매대금의 지급방법

라. 기타 법 시행령 제257조제3항에서 정한 사항

(4) 환매연기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되어 환매를 재개할 수 있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가 연기된 수익자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법 시행령 제25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5)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제1항에 의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6) 집합투자업자는 제5항에 따라 환매가 연기된 투자신탁재산만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7)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다. 매입/환매 방법적용 예외 사항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당일 매입 및 환매가 가능합니다.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판매회사가 투자자의 매입대금 납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1)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 등의 매도나 환매에 따라 수취한 결제대금으로 결제일에 MMF 의 수익증권을 매수하기로 판매회사와 미리 약정한 경우

(2) 투자자가 급여 등 정기적으로 받는 금전으로 수취일에 MMF 의 수익증권을 매수하기로 판매회사와 미리 약정한 경우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투자자의 환매청구일 이전에 산정된 기준가격으로 환매청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환매하는 경우

(1)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 등의 매수에 따른 결제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MMF 의 수익증권을 환매하기로 판매회사와 미리 약정한 경우

(2) 투자자가 공과금 납부 등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MMF 의 수익증권을 환매하기로 판매회사와 미리 약정한 경우

라. 전환 - 엄브렐러 클래스(A-U) 간의 전환

1) 전환형 구조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환(종류 A-U(수수료선취-오프라인-전환가능엄브렐러)에 한함)**

투자자는 투자자의 판단에 따라 다음 8개 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내에서 투자대상 집합투자기구를 변경(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환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는 징구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판매사의 사정에 따라 전환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 판매사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유형 | 전환가능 집합투자기구 |
|---|---|
| **주식파생형** | 하나UBS 엄브렐러뉴인덱스증권투자신탁(K-1호)[주식-파생형] |
| **주식파생형** | 하나UBS 엄브렐러리버스인덱스증권투자신탁(K-1호)[주식-파생형] |
| **주식형** | 하나UBS 코리아중소형 증권자투자신탁[주식] |
| **주식형** | 하나UBS IT코리아 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 |
| **주식형** | 하나UBS 밸류코리아 증권자투자신탁[주식] |
| **주식파생형** | 하나UBS 파워1.5배 레버리지인덱스 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 |
| **단기금융(MMF)** | 하나UBS 인Best신종MMF(K-1호)[국공채](수익자가 개인인 경우) |
| **단기금융(MMF)** | 하나UBS 신종MMF(S-29호)(수익자가 법인 등 개인이 아닌 경우) |

※ 상기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전환 절차 및 방법

수익자가 전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처리를 합니다. 이 경우 전환대상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기준가격은 전환처리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1)하나UBS 엄브렐러뉴인덱스증권투자신탁(K-1호)[주식-파생형], 하나UBS 엄브렐러리버스인덱스증권투자신탁(K-1호)[주식-파생형]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15시30분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환매하여 제2영업일(15시30분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매입합니다.

| 전환청구 | T일 | T+1일 | T+2일 | 영업일 |
|---|---|---|---|---|
| 15시30분 이전주1) | 전환청구일 | 기준가적용일 및 전환일 | | 한국거래소 개장일 |
| 15시30분 경과후 주1) | 전환청구일 | | 기준가적용일 및 전환일 | |

주1) 다만, 하나UBS 파워1.5배 레버리지인덱스 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으로 전환 청구를 하는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14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환매하여 제2영업일(14시 경과 후에 전환 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매입합니다.

(2)하나UBS 코리아중소형 증권자투자신탁[주식], 하나UBS IT코리아 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 하나UBS 밸류코리아 증권자투자신탁[주식]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15시30분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환매하여 제4영업일(15시30분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매입합니다.

| 전환청구 | T일 | T+1일 | T+2일 | T+3일 | 영업일 |
|---|---|---|---|---|---|
| 15시30분 이전 주1) | 전환청구일 | 기준가적용일 | | 전환일 | 한국거래소 개장일 |
| 15시30분 경과 후 주1) | 전환청구일 | | 기준가적용일 | 전환일 | |

주1) 다만, 하나UBS 파워1.5배 레버리지인덱스 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으로 전환 청구를 하는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14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환매하여 제4영업일(14시 경과 후에 전환 청구시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매입합니다.

(3) 하나UBS 인Best신종MMF(K-1호)[국공채], 하나UBS 신종MMF(S-29호)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환매하여 제2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매입합니다.

| 전환청구 | T일 | T+1일 | T+2일 | 영업일 |
|---|---|---|---|---|
| 17시 이전 주1) | 전환청구일 | 기준가적용일 및 전환일 | | 판매회사 영업일 |
| 17시 경과후 주1) | 전환청구일 | | 기준가적용일 및 전환일 | |

주1) 다만, 하나UBS 파워1.5배 레버리지인덱스 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으로 전환 청구를 하는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14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환매하여 제2영업일(14시 경과 후에 전환 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매입합니다.

(4)하나UBS파워1.5배 레버리지인덱스 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14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환매하여 제4영업일(14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매입합니다.

| 전환청구 | T일 | T+1일 | T+2일 | T+3일 | 영업일 |
|---|---|---|---|---|---|
| 14시 이전 | 전환청구일 | 기준가적용일 | | 전환일 | 한국거래소 개장일 |
| 14시 경과후 | 전환청구일 | | 기준가적용일 | 전환일 | |

3) 전환시 유의사항

- 수익자가 투자신탁의 전환에 의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집합투자규약 제4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는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합니다.
- 수익자가 투자신탁의 전환에 의하여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경우에 집합투자규약 제 40 조의 규정에

도 불구하고 판매회사는 선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투자신탁 전환시 및 전환후 수익자가 추가로 집합투자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 구분 | 내용 |
|---|---|
| 기준가격 산정방법 |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을 직전일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
|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 판매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수종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투자신탁입니다. 따라서, 당해 투자신탁은 판매보수・수수료 등 종류별로 부과되는 비용의 차이로 인하여 수익증권 종류별로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기준가격 산정주기 |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 전체에 대한 기준가격 및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자산운용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공지하지 아니합니다. |
| 기준가격 공시시기 |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
| 기준가격 공시방법 및 장소 | [서류공시]<br>판매회사영업점에서 게시 및 공시합니다.<br>[전자공시]<br>집합투자업자(www.ubs-hana.com)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전자 공시합니다.<br>판매회사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전자 공시합니다.<br>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전자 공시합니다. |

주 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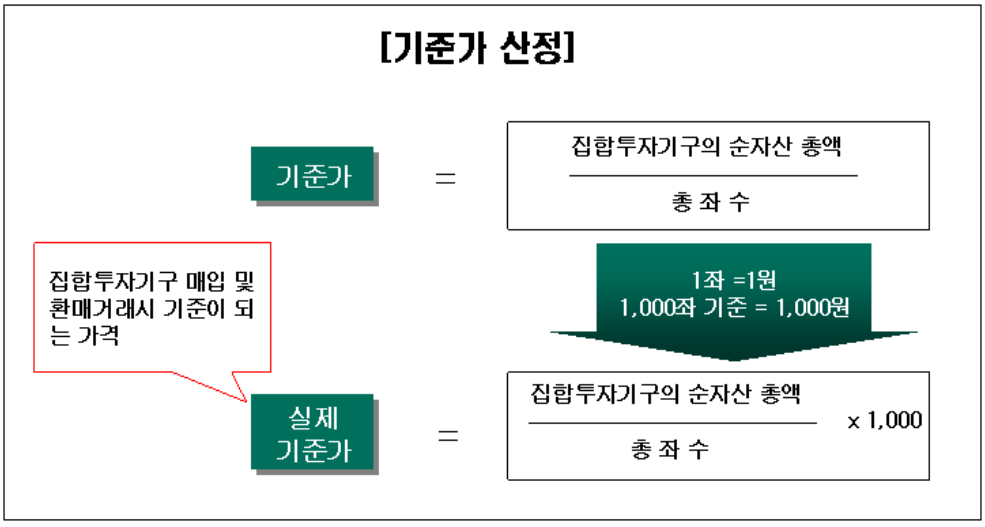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이 투자신탁은 단기금융투자신탁(MMF)으로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그 종류별로 다음의 방식에 의한 장부가격으로 평가합니다.

| 구 분 | 내 용 |
|---|---|
| 채무증권 | 취득원가와 만기액면가액의 차이를 상환기간에 걸쳐 주1)**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여 취득원가와 이자수익에 가감하여 산정한 가격 |
| 채무증권외의 자산 | 취득원가에 평가일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수익을 더하여 산정한 가격 |
| 장부가와 시가와의 괴리 조정 | 위의 방법으로 산정한 기준가격과 시가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과의 차이가 1,000분의 5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의 가격을 조정하거나 매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됨 |

주 1) 유효이자율법이란 유효이자율(채무증권의 만기일까지 기대되는 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를 최초로 취득할 당시의 취득원가에 일치시키는 이자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할인 또는 할증차금의 상각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안정적 자산비중이 3 영업일 연속 100 분의 30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법 제 238 조제 1 항 본문에 따라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법시행령 제 260 조제 2 항에 따른 공정가액으로 평가합니다. 또한, 장부가격 평가 중단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장부가격으로 평가합니다.

1) 직전 10 영업일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시적·일회성 대량 환매대금의 지급이 발생한 경우

① 1 영업일간 해지청구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② 2 영업일간 누적하여 해지청구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2) 집합투자업자가 안정적 자산 비중 감소, 장부가격과 시가의 괴리율 확대 등 선환매유인 발생이 우려되는 위기상황에서 장부가격 평가 중단을 포함하여 이 투자신탁재산의 가격을 조정하거나 자산을 매각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선환매유인 관리조치

1)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을 운용함에 있어 장부가액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대량환매 등에 사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 7-36 조제 1 항제 2 호 각 목의 자산 비율이 100 분의 30 을 초과하여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2) 집합투자업자는 일시적인 대량환매 등에 원활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잔존만기가 짧은 자산의 비중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방법 등을 활용하여 운용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3)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을 장부가액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일시적인 대량환매 등의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해당 방안이 실행 가능한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 및 점검하여야 합니다.

4)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에서 일시적인 대량환매 등이 발생하여 안정적 자산비중(30%)을 유지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 평가방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5)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에서 일시적인 대량환매 등으로 투자자간의 형평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환매연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환매를 일정기간 동안 연기할 수 있습니다.

6) 환매를 연기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당 기간동안 안정적 자산 확보방안, 평가방법 변경(시가평가), 적용시점 등 향후 운용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환매 연기가 종료된 시점부터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7) 상기 1) 내지 6)에도 불구하고 신탁계약서 제 29 조제 2 항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을 시가로 평가하게 되는 경우 1) 내지 6)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 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 종류형 명칭 | | 선취판매수수료 | 후취판매수수료 | 환매수수료 | 전환수수료 |
|---|---|---|---|---|---|
| A-U | 수수료선취-오프라인-전환가능 | 납입금액의 1.0% 이내 | 없음 | 없음 | 없음 |
| C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 없음 | | | |
| C-F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 | | | |
| W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 | | | |
| C-I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 | | | |
| 부과기준 | | 매입시 | 환매시 | 환매시 | 전환시 |

주)판매수수료는 판매회사가 상기의 수수료율 이내에서 수수료율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판매회사별 수수료율은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될 예정입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2022 년 03 월 24 일 기준)

| 종류형 명칭 | | 지급비율(연간, %) | | | | | | | | |
|---|---|---|---|---|---|---|---|---|---|---|
| | | 집합투자업자보수 | 판매회사보수 | 수탁회사보수 |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 총 보수 | 기타비용 주1) | 총보수·비용 주2) | (동종유형 총 보수) 주3) | 증권거래비용 주4) |
| 가입대상 | | 법인투자자 | | | | | | | | |
| A-U | 수수료선취-오프라인-전환가능 | 0.0336 | 0.0784 | 0.0100 | 0.0100 | **0.1320** | 0.0000 | **0.1320** | 0.34 | 0.0000 |
| C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 0.0336 | 0.0784 | 0.0100 | 0.0100 | **0.1320** | 0.0020 | **0.1366** | 0.20 | 0.0014 |
| C-F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 0.0336 | 0.0400 | 0.0100 | 0.0100 | **0.0936** | 0.0020 | **0.0982** | - | 0.0015 |
| W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 0.0336 | 0.0000 | 0.0100 | 0.0100 | **0.0536** | 0.0000 | **0.0536** | - | 0.0000 |
| C-I | 수수료미징구- | 0.0336 | 0.0600 | 0.0100 | 0.0100 | **0.1136** | 0.0025 | **0.1187** | - | 0.0014 |

| | | | | | | | | | |
|---|---|---|---|---|---|---|---|---|---|
| 오프라인-고액 | | | | | | | | | |
| 지급시기 | 매 6 개월 후급,<br>신탁의 일부해지 및 전부해지 시 | | | | | 사유<br>발생시 | - | - | 사유<br>발생시 |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 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직전 회계연도(2021.03.25~2022.03.24)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2)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 및 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3)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 해당 집합투자기구는 오프라인 클래스에 비해 일반적으로 투자비용이 저렴한 온라인 클래스가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주4)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은 이 투자신탁의 직전 회계기간의 수치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에 포함되는 항목 및 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금액<br>(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원) | 포함되는 항목 |
|---|---|---|
| 증권거래비용 | 60,996,006 | 주식 매매수수료, 채권 매매수수료, 장내파생상품 매매수수료, 장외파생상품 거래수수료, 대차/대주 또는 Repo 거래 중개수수료, 해외자산 매매수수료 등 (단, 세부 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금융비용 | 102,288,320 |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을 제외한 이자비용 등 (단, 세부 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기타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하는 비용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합니다.
-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증권 등 자산의 매매수수료
  2. 증권 등 자산의 예탁비용(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전자등록비용) 및 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7.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9.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2022년 03월 24일 기준)

(단위: 1,000원)

| 종류형 명칭 | | 1 년 | 2 년 | 3 년 | 5 년 | 10 년 |
|---|---|---|---|---|---|---|
| A-U | 수수료선취-오프라인-전환가능 | 113 | 127 | 142 | 174 | 268 |
| C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 14 | 29 | 44 | 77 | 176 |
| C-F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 10 | 21 | 32 | 56 | 127 |
| W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 5 | 11 | 17 | 30 | 69 |
| C-I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 12 | 25 | 38 | 67 | 153 |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판매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한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2) 또한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가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나. 과세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세금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신탁에서 납부한 채권 등의 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펀드가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증권거래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면제 또는 감면혜택을 받게 됩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수익자가 얻은 모든 수익은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하는 날, 또는 계약을 연장하는 날에 원천징수가 이루어집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증권의 매매를 위한 일반기준가와, 과세 목적을 위한 과표기준가를 계산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및 일반법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수익자인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당해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4) 미국세금 원천징수 및 해외계좌 신고제도(FATCA)**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의 조세 당국 등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FATCA 준수 목적으로, 특정 투자자의 정보가 미국 세무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그러한 투자자에 대한 지급이 보류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그들이 미국 납세의무자들이거나 미국 납세의무자로 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해당 투자신탁의 판매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5)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및 공통보고기준(CRS)**

대한민국을 비롯한 기타 여러 국가들은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MCAA)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할 예정이며, 이의 이행을 위하여 OECD 에 의하여 마련된 금융계좌정보 자동교환 표준모델인 공통보고기준(Common Reporting Standard for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을 도입하였습니다. 해당 협정의 일정에 따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의거한 투자자의 금융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의 조세 당국 등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 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간 | 회계감사법인 | 감사의견 |
|---|---|---|
| 제20기(2019.03.25 ~ 2020.03.24) | 한영회계법인 | 적정 |
| 제21기(2020.03.25 ~ 2021.03.24) | 한영회계법인 | 적정 |
| 제22기(2020.03.25 ~ 2021.03.24) | 한영회계법인 | 적정 |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 원)

| 요약재무정보 | | | |
|---|---|---|---|
| 항 목 | 제 22 기 | 제 21 기 | 제 20 기 |
| | 2022.03.24 | 2021.03.24 | 2020.03.24 |
| 운용자산 | 4,203,855,000,862 | 3,906,321,187,550 | 2,298,522,328,185 |
| 유가증권 | 215,446,126,560 | 513,484,069,748 | 29,906,739,460 |
| 파생상품 | 0 | 0 | 0 |
| 부동산/실물자산 | 0 | 0 | 0 |
| 현금 및 예치금 | 401,944,216,162 | 120,928,416,711 | 75,213,934,453 |
| 기타 운용자산 | 3,586,464,658,140 | 3,271,908,701,091 | 2,193,401,654,272 |
| 기타자산 | 8,014,086,555 | 16,002,051,344 | 28,728,283,947 |
| 자산총계 | 4,211,869,087,417 | 3,922,323,238,894 | 2,327,250,612,132 |
| 운용부채 | 0 | 0 | 20,000,410,958 |
| 기타부채 | 51,770,522,314 | 43,446,416,592 | 41,027,813,683 |
| 부채총계 | 51,770,522,314 | 43,446,416,592 | 61,028,224,641 |
| 원본 | 4,160,098,565,103 | 3,878,876,822,302 | 2,266,222,387,491 |
| 수익조정금 | 0 | 0 | 0 |
| 이익조정금 | 0 | 0 | 0 |
| 자본총계 | 4,160,098,565,103 | 3,878,876,822,302 | 2,266,222,387,491 |
| 운용수익 | 52,209,064,196 | 36,956,208,740 | 59,433,824,157 |
| 이자수익 | 55,173,836,239 | 41,124,970,773 | 59,820,913,172 |
| 배당수익 | 0 | 0 | 0 |
| 매매평가차손익 | -2,964,772,043 | -4,168,762,033 | -387,089,015 |
| 기타수익 | 0 | 0 | 0 |

| | | | |
|---|---|---|---|
| 운용비용 | 272,939,876 | 202,987,164 | 289,047,961 |
| 관련회사보수 | 0 | 0 | 0 |
| 매매수수료 | 60,996,006 | 52,507,021 | 26,525,234 |
| 기타비용 | 211,943,870 | 150,480,143 | 262,522,727 |
| 당기순이익 | 51,936,124,320 | 36,753,221,576 | 59,144,776,196 |
| 매매회전율 | 0 | 0 | 0 |

주 1)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는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

(단위: 원,%)

| 자산유형별 거래비용 | | | | | | |
|---|---|---|---|---|---|---|
| 구분 | 당해 연도 | | | 전년도 | | |
| | 거래금액(A) | 거래비용 | | 거래금액(A) | 거래비용 | |
| | | 금액(B) | 거래비용 비율(B/A) | | 금액(B) | 거래비용 비율(B/A) |
| 주식 이외의 증권 | 183,173,595,755,875 | - | - | 110,184,615,340,313 | - | - |
| 합 계 | 183,173,595,755,875 | - | - | 110,184,615,340,313 | - | - |

<주식의 매매회전율>

(단위:주,원,%)

| 매매회전율 | | | | | | |
|---|---|---|---|---|---|---|
| 주식 매수 | | 주식 매도 | | 당해연도 보유 주식의 평균가액(B) | 매매회전율(A/B) | 동종 유형 평균 매매회전율 |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A) | | | |
| - | - | - | - | - | - | - |

**나. 재무상태표**

(단위 : 원)

| 재무상태표 | | | |
|---|---|---|---|
| 항 목 | 제 22 기 | 제 21 기 | 제 20 기 |
| | 2022.03.24 | 2021.03.24 | 2020.03.24 |
| 운용자산 | 4,203,855,000,862 | 3,906,321,187,550 | 2,298,522,328,185 |
| 현금및예치금 | 401,944,216,162 | 120,928,416,711 | 75,213,934,453 |

| | | |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01,944,216,162 | 928,416,711 | 35,213,934,453 |
| 정기예금 | 300,000,000,000 | 120,000,000,000 | 40,000,000,000 |
| 대출채권 | 3,586,464,658,140 | 3,271,908,701,091 | 2,193,401,654,272 |
| 환매조건부채권매수 | 120,000,000,000 | 34,000,000,000 | 0 |
| 매입어음 | 3,466,464,658,140 | 3,237,908,701,091 | 2,193,401,654,272 |
| 유가증권 | 215,446,126,560 | 513,484,069,748 | 29,906,739,460 |
| 채무증권 | 215,446,126,560 | 513,484,069,748 | 29,906,739,460 |
| 기타자산 | 8,014,086,555 | 16,002,051,344 | 28,728,283,947 |
| 매도유가증권미수금 | 0 | 0 | 20,119,500,000 |
| 미수이자 | 6,852,685,457 | 6,095,767,509 | 8,604,039,661 |
| 선급비용 | 1,161,401,098 | 9,906,283,835 | 4,744,286 |
| 자 산 총 계 | 4,211,869,087,417 | 3,922,323,238,894 | 2,327,250,612,132 |
| 운용부채 | 0 | 0 | 20,000,410,958 |
| 환매조건부채권매도 | 0 | 0 | 20,000,410,958 |
| 기타부채 | 51,770,522,314 | 43,446,416,592 | 41,027,813,683 |
| 해지미지급금 | 1,257,324 | 0 | 0 |
| 수수료미지급금 | 20,427,948 | 18,049,920 | 16,392,608 |
| 미지급이익분배금 | 51,748,837,042 | 43,428,366,672 | 41,011,421,075 |
| 부 채 총 계 | 51,770,522,314 | 43,446,416,592 | 61,028,224,641 |
| 원 본 | 4,160,098,565,103 | 3,878,876,822,302 | 2,266,222,387,491 |
| 자 본 총 계 | 4,160,098,565,103 | 3,878,876,822,302 | 2,266,222,387,491 |
| 부채 및 자본 총계 | 4,211,869,087,417 | 3,922,323,238,894 | 2,327,250,612,132 |
| 총좌수 | 4,160,098,565,103 | 3,878,876,822,302 | 2,266,222,387,491 |
| 기준가격 | 1000.00 | 1000.00 | 1000.00 |

**다. 손익계산서**

(단위 : 원)

| 손익계산서 | | | |
|---|---|---|---|
| 항 목 | 제 22 기<br>2021.03.25 ~<br>2022.03.24 | 제 21 기<br>2020.03.25 ~<br>2021.03.24 | 제 20 기<br>2019.03.25 ~<br>2020.03.24 |
| 운용수익(운용손실) | 52,209,064,196 | 36,956,208,740 | 59,433,824,157 |
| 투자수익 | 55,173,836,239 | 41,124,970,773 | 59,820,913,172 |
| 이자수익 | 55,173,836,239 | 41,124,970,773 | 59,820,913,172 |
|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 102,414,338 | 159,309,096 | 144,878,401 |
| 채무증권매매차익 | 102,414,338 | 159,309,096 | 144,878,401 |

| | | | |
|---|---|---|---|
|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 3,067,186,381 | 4,328,071,129 | 531,967,416 |
| 채무증권매매차손 | 3,067,186,381 | 4,328,071,129 | 531,967,416 |
| 운용비용 | 272,939,876 | 202,987,164 | 289,047,961 |
| 매매수수료 | 60,996,006 | 52,507,021 | 26,525,234 |
| 이자비용 | 102,288,320 | 54,022,293 | 169,221,057 |
| 기타운용비용 | 109,655,550 | 96,457,850 | 93,301,670 |
|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 | 51,936,124,320 | 36,753,221,576 | 59,144,776,196 |
| 좌당순이익(좌당순손실) | 12.52 | 10.66 | 18.07 |

## 2.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신종MMF(S-29호) [단위: 백만좌, 백만원]

| 기간 | 기간초 잔고 | | 회계기간 중 | | | | 기간말 잔고 | |
|---|---|---|---|---|---|---|---|---|
| | | | 설정(발행) | | 환매 | | | |
|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 2019/03/25~2020/03/24 | 2,691,691 | 2,691,691 | 17,561,194 | 17,720,953 | 18,039,867 | 18,217,759 | 2,266,222 | 2,307,234 |
| 2020/03/25~2021/03/24 | 2,266,222 | 2,266,222 | 25,038,472 | 25,208,819 | 23,479,022 | 23,642,695 | 3,878,877 | 3,922,305 |
| 2021/03/25~2022/03/24 | 3,878,877 | 3,878,877 | 33,398,976 | 33,572,668 | 33,161,182 | 33,335,062 | 4,160,099 | 4,211,847 |

(주1)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가.종류형펀드 | | | | | | | | |
|---|---|---|---|---|---|---|---|---|
| 신종MMF(S-29호)ClassC | | | | | | | | [단위: 백만좌, 백만원] |

| 기간 | 기간초 잔고 | | 회계기간 중 | | | | 기간말 잔고 | |
|---|---|---|---|---|---|---|---|---|
| | | | 설정(발행) | | 환매 | | | |
|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 2019/03/25~2020/03/24 | 471,610 | 471,610 | 3,084,019 | 3,110,208 | 3,013,262 | 3,040,313 | 550,610 | 559,824 |
| 2020/03/25~2021/03/24 | 550,610 | 550,610 | 2,710,267 | 2,724,935 | 2,545,351 | 2,558,276 | 724,324 | 731,455 |
| 2021/03/25~2022/03/24 | 724,324 | 724,324 | 2,639,885 | 2,652,950 | 2,664,284 | 2,677,038 | 706,758 | 714,596 |

신종MMF(S-29호)ClassC-F [단위: 백만좌, 백만원]

| 기간 | 기간초 잔고 | | 회계기간 중 | | | | 기간말 잔고 | |
|---|---|---|---|---|---|---|---|---|
| | | | 설정(발행) | | 환매 | | | |
|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 2019/03/25~2020/03/24 | 2,221,654 | 2,221,654 | 14,437,691 | 14,562,518 | 14,982,989 | 15,124,091 | 1,716,339 | 1,745,733 |
| 2020/03/25~2021/03/24 | 1,716,339 | 1,716,339 | 22,317,902 | 22,459,777 | 20,905,178 | 21,042,588 | 3,156,567 | 3,188,862 |
| 2021/03/25~2022/03/24 | 3,156,567 | 3,156,567 | 30,722,112 | 30,866,098 | 30,459,842 | 30,604,351 | 3,450,625 | 3,490,215 |

신종MMF(S-29호)ClassC-I [단위: 백만좌, 백만원]

| 기간 | 기간초 잔고 | | 회계기간 중 | | | | 기간말 잔고 | |
|---|---|---|---|---|---|---|---|---|
| | | | 설정(발행) | | 환매 | | | |
|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 2021/06/09~2022/03/24 | 5,000 | 5,000 | 15,000 | 15,000 | 10,000 | 10,034 | 5,000 | 5,010 |

(주1)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3.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세전기준)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투자신탁의 투자성과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전자공시사이트에 게시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별도로 표시한 기준일이 있을 경우 그 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평균수익률은 해당 기간 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 방식으로 계산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이며,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 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 동안 해당 펀드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 1) 비교지수 : Call 금리 * 100%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가. 연평균수익률 (세전기준)

(기준일 : 2022 년 03 월 24 일,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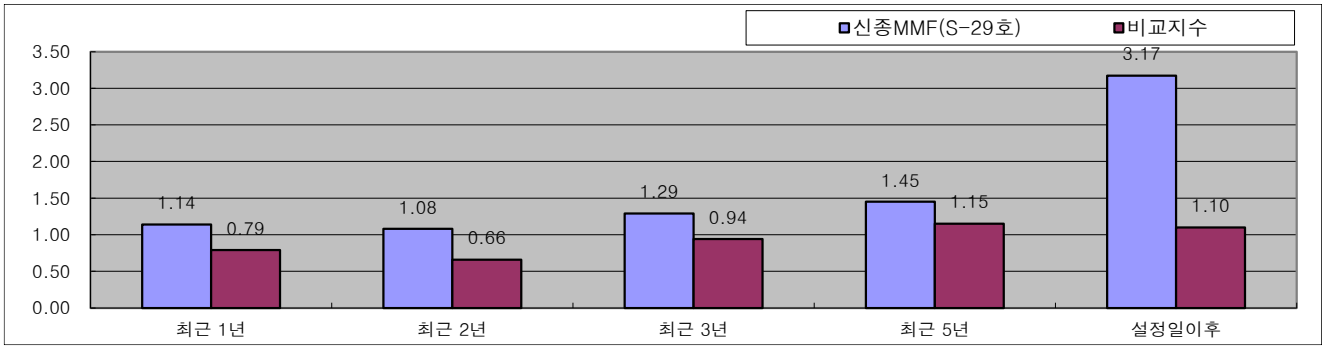


| 종류 | 최초설정일 | 최근 1년 | 최근 2년 | 최근 3년 | 최근 5년 | 설정일이후 |
|---|---|---|---|---|---|---|
| | | 2021/03/25 ~ 2022/03/24 | 2020/03/25 ~ 2022/03/24 | 2019/03/25 ~ 2022/03/24 | 2017/03/25 ~ 2022/03/24 | (%) |
| 신종MMF(S-29호) | 2000-03-25 | 1.14 | 1.08 | 1.29 | 1.45 | 3.17 |
| 비교지수 | 2000-03-25 | 0.79 | 0.66 | 0.94 | 1.15 | 1.10 |
| 수익률 변동성(%) | 2000-03-25 | 0.06 | 0.05 | 0.06 | 0.06 | 0.43 |
| 신종MMF(S-29호)ClassA-U | 2013-05-13 | | | | | |
| 비교지수 | 2013-05-13 | | | | -1.43 | |
| 수익률 변동성(%) | 2013-05-13 | | | | | 0.17 |
| 신종MMF(S-29호)ClassC | 2000-03-25 | 1.11 | 1.05 | 1.25 | 1.42 | 3.17 |
| 비교지수 | 2000-03-25 | 0.79 | 0.66 | 0.94 | 1.15 | 1.10 |
| 수익률 변동성(%) | 2000-03-25 | 0.06 | 0.05 | 0.06 | 0.06 | 0.43 |
| 신종MMF(S-29호)ClassW | 2013-11-15 | | | | -0.01 | |
| 비교지수 | 2013-11-15 | | | | -0.86 | |
| 수익률 변동성(%) | 2013-11-15 | | | | | 0.01 |
| 신종MMF(S-29호)ClassC-F | 2016-03-10 | 1.15 | 1.08 | 1.29 | 1.46 | 1.47 |
| 비교지수 | 2016-03-10 | 0.79 | 0.66 | 0.94 | 1.15 | 1.17 |
| 수익률 변동성(%) | 2016-03-10 | 0.06 | 0.05 | 0.06 | 0.06 | 0.05 |
| 신종MMF(S-29호)ClassC-I | 2021-06-09 | | | | | 0.98 |
| 비교지수 | 2021-06-09 | | | | | 0.70 |
| 수익률 변동성(%) | 2021-06-09 | | | | | 0.07 |

##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세전기준)

(기준일 : 2022 년 03 월 24 일,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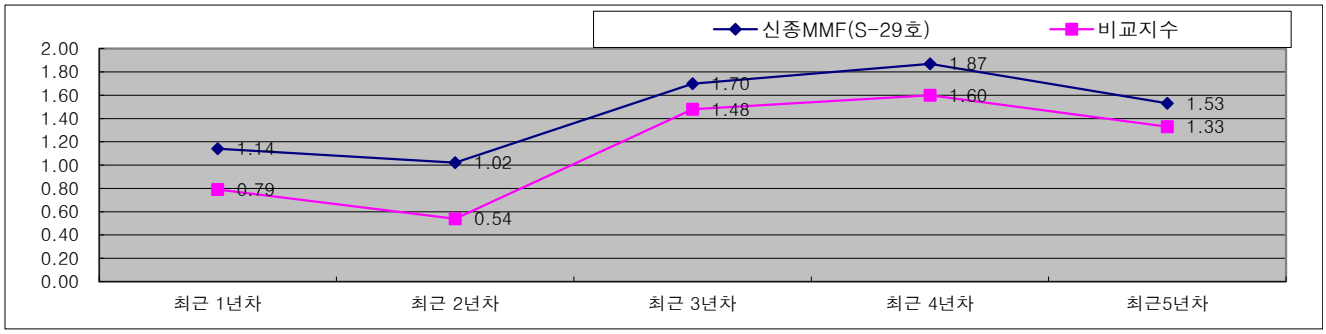

| 종류 | 최초설정일 | 최근 1년차 | 최근 2년차 | 최근 3년차 | 최근 4년차 | 최근5년차 |
|---|---|---|---|---|---|---|
| | | 2021/03/25 ~ 2022/03/24 | 2020/03/25 ~ 2021/03/24 | 2019/03/25 ~ 2020/03/24 | 2018/03/25 ~ 2019/03/24 | 2017/03/25 ~ 2018/03/24 |
| 신종MMF(S-29호) | 2000-03-25 | 1.14 | 1.02 | 1.70 | 1.87 | 1.53 |
| 비교지수 | 2000-03-25 | 0.79 | 0.54 | 1.48 | 1.60 | 1.33 |
| 신종MMF(S-29호)ClassA-U | 2013-05-13 | | | | | |
| 비교지수 | 2013-05-13 | | | | | 1.33 |
| 신종MMF(S-29호)ClassC | 2000-03-25 | 1.11 | 0.98 | 1.67 | 1.84 | 1.50 |
| 비교지수 | 2000-03-25 | 0.79 | 0.54 | 1.48 | 1.60 | 1.33 |
| 신종MMF(S-29호)ClassW | 2013-11-15 | | | | | |
| 비교지수 | 2013-11-15 | | | | | 1.33 |
| 신종MMF(S-29호)ClassC-F | 2016-03-10 | 1.15 | 1.02 | 1.71 | 1.88 | 1.54 |
| 비교지수 | 2016-03-10 | 0.79 | 0.54 | 1.48 | 1.60 | 1.33 |
| 신종MMF(S-29호)ClassC-I | 2021-06-09 | 0.98 | | | | |
| 비교지수 | 2021-06-09 | 0.70 | | | | |

##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2022 년 03 월 24 일 기준 / 단위 : 백만원, %)

| 통화별 구분 | 증권 | | | | 파생상품 | | 부동산 | 특별자산 | | 단기대출 및 예금 | 기타 | 자산총액 |
|---|---|---|---|---|---|---|---|---|---|---|---|---|
| | 주식 | 채권 | 어음 | 집합투자증권 | 장내 | 장외 | | 실물자산 | 기타 | | | |
| 대한민국 | 0 | 2,185,004 | 1,503,736 | 0 | 0 | 0 | 0 | 0 | 0 | 403,125 | 120,004 | 4,211,869 |
| | (0.00) | (51.88) | (35.7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9.57) | (2.85) | (100.00) |
| 자산합계 | 0 | 2,185,004 | 1,503,736 | 0 | 0 | 0 | 0 | 0 | 0 | 403,125 | 120,004 | 4,211,869 |
| | (0.00) | (51.88) | (35.7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9.57) | (2.85) | (100.00) |

(주 1) 비중은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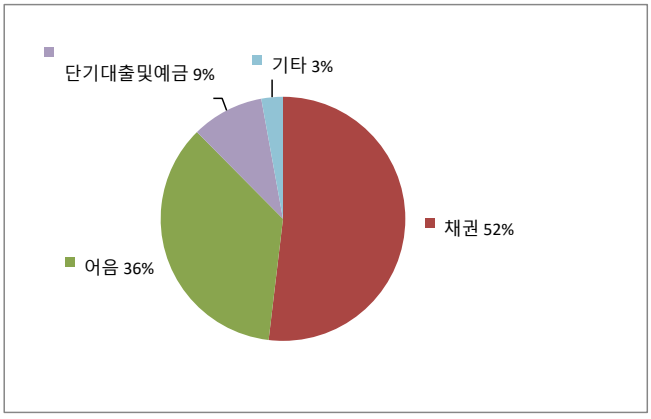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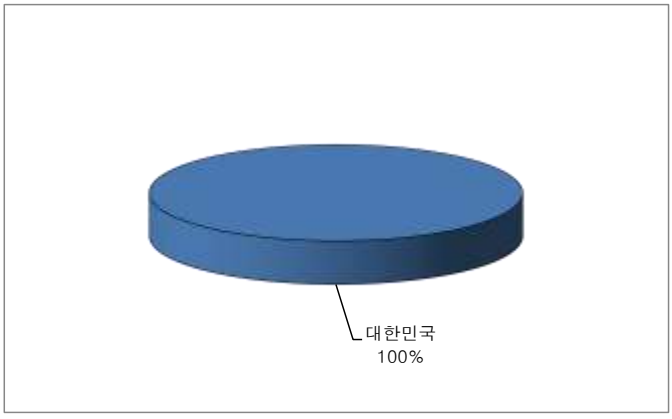

#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 집합투자기구의 운용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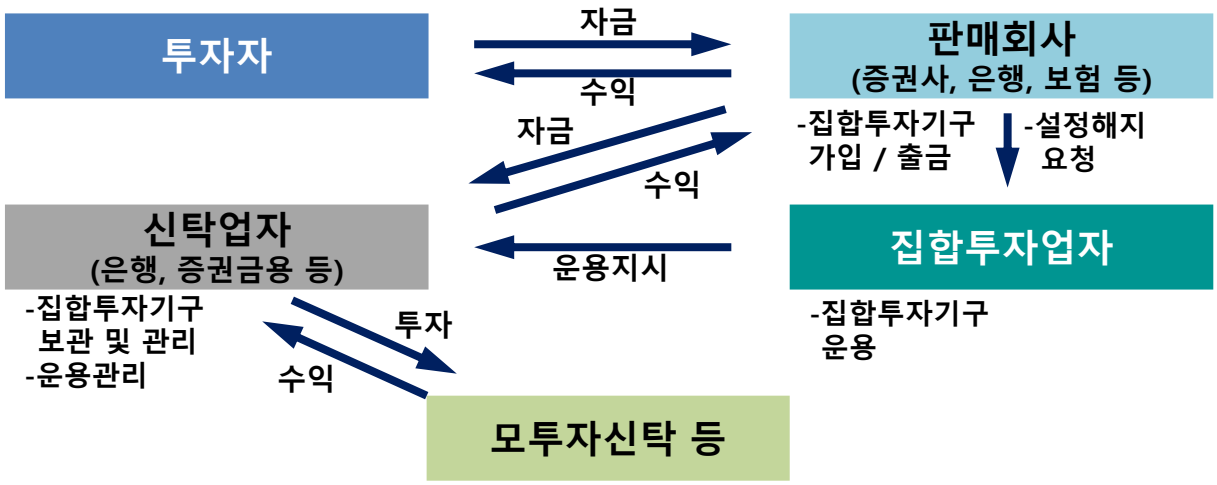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 | |
|---|---|
| 회사명 |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 |
| 주소 및<br>연락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br>(02-3771-7800, www.ubs-hana.com) |
| 회사연혁 | 1968.12.16 한국투자공사 설립<br>1970. 5.20 한국투자공사 증권투자신탁업무 시작<br>1977. 2.14 한국투자공사 대한투자신탁과 증권감독원으로 분리<br>2000. 6. 4 증권사 전환으로 대한투자신탁증권㈜로 사명 변경<br>2000. 6.27 대한투자신탁운용㈜ 설립(대한투자증권㈜ 전액출자<br>2000. 7. 1 영업개시<br>2007.7.27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로 사명 변경 |
| 자본금 | 450억 |
| 주요주주현황 | UBS AG, 하나증권㈜ |

나. 주요업무

1) 주로 수행하는 업무

-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 기타 관련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서 규정한 사항

2) 의무와 책임

- 선관의무
  -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 책임
  -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연대책임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백만원)

| 재무상태표 | | | 손익계산서 | | |
|---|---|---|---|---|---|
| 항 목 | 20.12.31 | 19.12.31 | 항 목 | 20.12.31 | 19.12.31 |
| 현금및예치금 | 114,839 | 109,454 | 영업수익 | 27,655 | 29,026 |
| 유가증권및대출채권 | 1,788 | 1,850 | 영업비용 | 17,117 | 17,085 |
| 유형자산및기타자산 | 7,668 | 7,668 | **영업이익** | **10,538** | **11,941** |
| **자산총계** | **124,528** | **118,972** | 영업외수익 | 10 | 22 |
| 기타부채등 | 4,982 | 4,025 | 영업외비용 | 113 | 23 |
| 예수부채 | 47,900 | 42,545 | - | - | - |
| **부채총계** | **52,882** | **46,570** | **경상이익** | **10,435** | **11,940** |
| 자본금 | 45,000 | 45,000 | 특별이익 | - | -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465 | 445 | 특별손실 | - | - |
| 이익잉여금 | 26,181 | 26,957 | 법인세 | 2,562 | 2,679 |
| **자본총계** | **71,646** | **72,402** | **당기순이익** | **7,873** | **9,261** |

라. 운용자산규모(2022년 03월 31일 기준 / 단위 : 억원)

| 주식형 | 혼합형 | 채권형 | 재간접 | MMF | 파생형 | 부동산 | 특별자산 | 혼합자산 | 총 계 |
|---|---|---|---|---|---|---|---|---|---|
| 15,333 | 7,624 | 18,425 | 14,024 | 182,352 | 3,867 | 1,593 | 3,720 | 1,144 | 248,083 |

※ 위 수치는 일임계약 금액을 포함한 수치입니다.

**2.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3.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가. 신탁회사

1) 회사의 개요

| 회사명 | 주식회사 우리은행 |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회현동 1 가)(T : 2002-3000) |
| 홈페이지 | www.wooribank.com |

2) 주요업무

-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3) 의무와 책임

- 의 무
  - 신탁업자는 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3자로부터 위탁 받은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이라는 사실과 위탁자를 명기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는 신탁재산 중 증권, 그 밖에 법 시행령 제268조제1항에 정하는 것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집합투자기구 별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증권의 유통 가능성, 다른 법령에 따른 유통방법이 있는지 여부, 예탁의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에게 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이행 또는 보관·관리 등에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 신탁업자는 법 시행령 제268조 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각각의 집합투자재산 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3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집합투자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68조제4항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자기의 고유재산의 운용,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또는 자기가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1. 투자설명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2.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의 여부
3.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의 여부
4.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5.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6.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7. 집합투자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관리 중인 집합투자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8.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시 기존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 지의 여부

- 책 임
  -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탁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연대책임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이 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나. 일반사무관리회사

1) 회사의 개요

| 회사명 | 하나펀드서비스㈜ |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10층<br>(Tel : 6714-4600) |
| 홈페이지 | http://www.hanais.co.kr |

2) 주요업무

-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전달된 운용내역에 의한 집합투자자산을 평가
-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계산(기준가격 산정업무)
- 집합투자업자에 통보(기준가격의 통보업무)
- 기타 투자신탁재산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자료제공 및 기타업무를 수행

3) 의무와 책임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여야 합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 : 해당사항 없음

라. 채권평가회사

1) 회사의 개요

| 회사명 | 주소 및 연락처 |
|---|---|
| 한국자산평가 | (110-7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88 (운니동 98-5) 삼환빌딩 4층<br>(02)2251-1300<br>-http://www.koreaap.com<br>-설립일: 2000.05.29 / 등록일: 2000.07.01<br>-자본금: 50억원 |
| NICE 피앤아이 | (150-97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9(여의도동)<br>(02)398-3900<br>-http://www.nicepni.com/<br>-설립일: 2000.06.16 / 등록일: 2004.06.29<br>-자본금: 55.5억원 |
| KIS 자산평가 | (150-88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여의도동)<br>한국화재보험협회빌딩 4층<br>(02)3215-1400<br>-http://www.bond.co.kr<br>-설립일: 2000.06.20 / 등록일: 2004.06.29<br>-자본금: 30억원 |
| 에프앤자산평가 | (07805)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2로 61<br>(02) 721-5300<br>- http://www.fnpricing.com/<br>-설립일: 2011.06.09 / 등록일: 2011.9.23<br>-자본금: 50억원 |

2) 주요업무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제공합니다.

#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 총회 등

1) 투자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집합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투자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1)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1. 수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3) 연기수익자총회

-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 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밖의 수수료의 인상,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 및 법 시행령 제245조 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 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제외),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 (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투자신탁의 합병(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되고,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 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손해배상의 주체)**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 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투자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설정한 후 1년(법시행령제81조제3항의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설정하고 1년(법시행령제81조제3항의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소규모펀드 임의해지시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설정한 후 1년(법시행령제81조제3항의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이거나, 설정하고 1년(법시행령제81조제3항의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이 투자신탁의 향후 처리 계획(해지, 합병, 모자형 전환,

존속 등)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합니다.

**3.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1)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1.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2.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3.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가 기재된 서류
  4.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2)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1)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2)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 그 밖에 법시행령 제92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3)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3)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4) 법제247조제5항 각 호의 사항
(5)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
(6) 회계감사인의 선임, 교체 및 해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신탁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 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 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신탁업자의 변경 (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 에서 정한 사유 및 법 시행령 제245조 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 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 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제외)

(3)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투자신탁종류의 변경(다만, 투자신탁을 설정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그 내용이 신탁계약서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5)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6)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시행령 제 80 조제 1 항제 3호의 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

(7)집합투자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 및 명령에 따른 경우는 제외)

(8)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9)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 (www.ubs-hana.com)・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 및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1)운용전문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2)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

(3)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5)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및 법 제 123 조 제 3 항 제 2 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6)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7)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8)설정이후1년(법시행령제81조제3항의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9)설정되고 1년(법시행령제81조제3항의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10)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법 시행령 제2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지상권・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변경
-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11)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한다.

-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 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위험지표의 공시: 해당사항 없음

**4.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 구 분 | 선정기준 |
|---|---|
| **<투자증권거래>** | ① 중개회사를 선정함에 있어 고객에게 최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br>1. 펀드 또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중개수수료)이나 수익(Value of Research)이 주어지는 여건 하에서 가장 유리한 회사<br>2. 거래 유형(예: 상장 주식 블록 매매, 장외주식 매매, 파생거래 등)에 따라 가장 효율적으로 매매를 체결시키는 회사<br>3.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

| | |
|---|---|
| | ② 선정절차<br>1. 정기적인 중개회사 평가를 통해 중개회사와 중개회사 서비스의 양적, 질적 변화를 반영한다.<br>2. 운용 관련 인력 전원의 평가를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 가중치는 달라질 수 있다.<br>3. 세부 선정 기준은 별도로 정한 규칙(Broker Vote Policy)에 따른다.<br>4. 세부 선정 기준에 따라 중개사를 평가하고, 그 순위에 따라 중개회사별 매매 배분한다.<br>5. 중개회사별 매매 배분 계획은 준법 감시부서에 그 결과를 통보한다.<br>6. 운용역은 트레이더에게 상기 중개회사별 매매배분 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한 중개회사에 매매위탁을 지정할 수 없다. 단, 블록트레이딩(Block trading) 등의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고객의 이해관계에 상충되지 않는 한, 사전에 결정된 중개회사별 매매 배분 계획의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있다.<br><br>③ 중개회사로부터 받는 편의수혜<br>1. 이 기준에서 편의수혜라 함은 회사가 중개회사에 매매의 위탁을 하면서 지급하는 매매수수료에 대한 반대급부로 형태에 관계없이 회사가 중개회사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를 말한다.<br>2. 회사가 편의수혜로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회사의 운용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조사분석,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 및 중개수수료의 할인에 한한다.<br>3. 운용역 또는 트레이더는 매매와 관련된 수수료 및 편의수혜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과도하게 자산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장내파생상품거래>** | <투자증권거래>의 경우와 같음 |

**5.외국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 해당사항 없음

**6.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 용 어 | 내 용 |
|---|---|
| 금융투자상품 |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 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
| 집합투자 | 2 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
| 펀드 |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
| 투자신탁 | 집합투자업자와 수탁회사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
| 투자회사 | 설립자본금을 바탕으로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
| 수익증권 |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
| 순자산 |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
| 증권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40% 이상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
| 부동산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40% 이상을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
|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 혼합형 펀드로서 집합투자재산의 40%를 주식, 채권, 특별자산,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
| 개방형 |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
| 폐쇄형 | 환매가 가능하지 않은 펀드를 말합니다 |
| 추가형 |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
| 모자형 |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 외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
| 종류형 |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
| 기준가격 |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
| 자본이득 |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
| 배당소득 |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
| 보수 |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
| 선취수수료 |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
| 후취수수료 | 펀드 환매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

| | |
|---|---|
| 환매수수료 | 펀드를 일정 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
| 설정 |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
| 해지 |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
| 투자자총회 | 집합투자규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결정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 |
|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 자리의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
| 원천징수 |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
| 비교지수 |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
| 레버리지효과 | 차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br>상승하면 원본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크지만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
| 선물환거래 | 미래의 거래 환율 가격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정해놓는 거래를 말합니다. |
| 금리스왑 | 금융 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하여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
| 성과보수 |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받는 보수를 말하여 사모 펀드에만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
| 신주인수권부 사채 |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
| 자산유동화증권 | 자산유동화증권이란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합니다. |
| 전환사채 |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
| 주식워런트 |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증서로 주식옵션과 유사합니다. |